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능동적 대처 -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023. 10.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제안 이유

탄소중립기본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기후위기'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는 경제·환경·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고, 기상청은 2005년 「기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제공·공동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후변화감시법이 제안되었습니다.

2.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안 제4조).

(3) 기후·기후변화 감시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관측의 품질관리, 기후변화 실태 파악 등을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합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기후·기후변화 예측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13개월전망 및 기후전망)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시나리오의 승인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활용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 등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제협력의 추진, IPCC 대응협의회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을 하도록 합니다(안 제17부터 제20조까지).

(7) 기후·기후변화 인식확산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 시사점

기존에도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는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측정·조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기상청장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법률은 기후와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을 통해 생산된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이를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대국민 인식 확산으로 구성되어, 기상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률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법 시행 전에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